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49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이춘석 · 강준현 · 이성운
박희승 · 윤준병 · 한민수
신영대 · 안호영 · 윤종균
이연희 · 이원택 · 한병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구조에 부합하면서도 국가 첨단기술 발전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 거점이 필요함.

현재 전북지역에는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형 공공 고등과학기술기관이 부재하며, 이로 인해 첨단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기술 창출, 기업 연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이에 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북지역의 첨단과학기술 교육·연구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그 외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7조의3(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전북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북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7조의4(전북과학기술원 설립)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읍·면·동의 구역 특례) ①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7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②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u>
<u><신 설></u>	<u>제77조의3(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 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전북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북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u>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u>

<신 설>

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전략연
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
관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
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
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으
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
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
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
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
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7조의4(전북과학기술원 설립)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
법」 제7조 및 같은 법에 근거
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제104조(읍·면·동의 구역 특례) <u>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u>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u> 제104조(읍·면·동의 구역 특례) <u>①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	---